

01. 정부원가계산 실무

제1장 원가계산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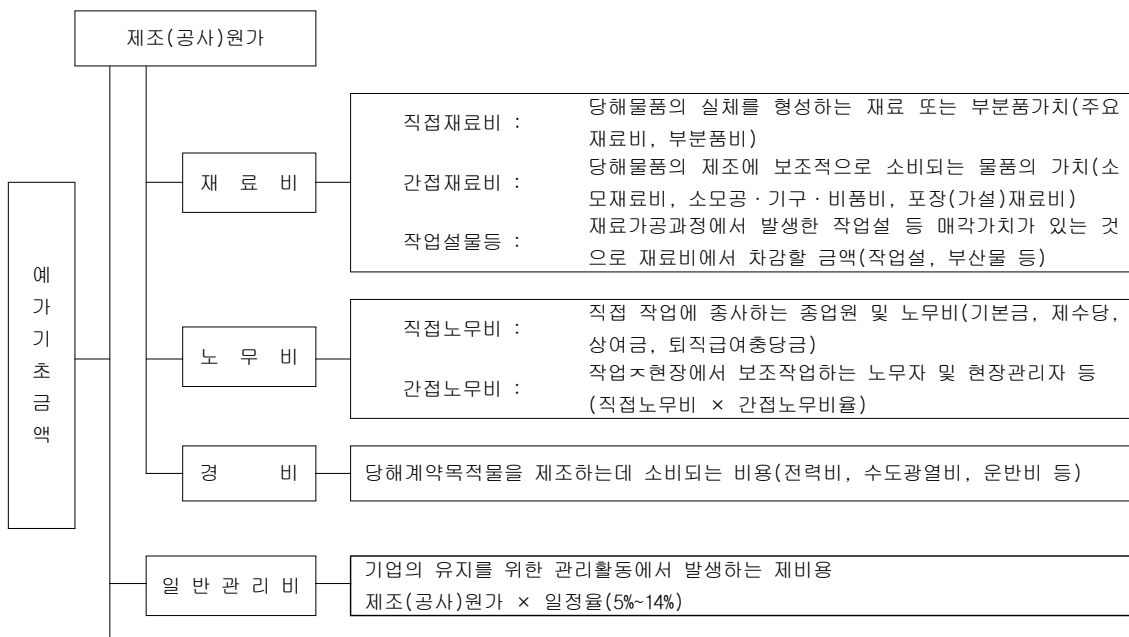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시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가계산제도는 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원가를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재무제표작성 또는 원가 관리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계산하는 기업회계 원가계산제도와는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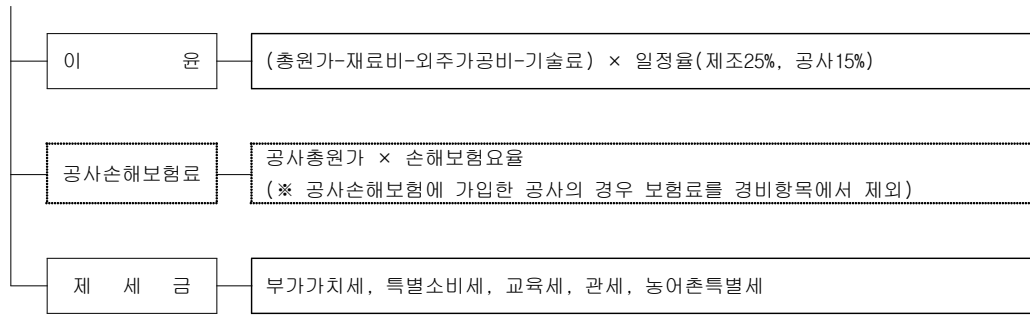
제2장 원가계산제도 관련 법령 체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 o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o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o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o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총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3장 원가계산 체계

【그림】 원가계산 체계





1.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2.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단가
- 통관료
- 보세창고료
- 하역료
- 국내운반비
- 신용장개설수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제4장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원가계산을 할 때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순서대로 적용한다.

1. 거래실례가격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결정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한다.

2.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1) 노무비의 경우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단위당 가격(노임단가)으로 적용한다.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 제조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2)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도서지역 등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노임단가의 15% 이내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7조제2항)하고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3.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현재는 단위당 가격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시중노임의 이상급 등 등으로 시중노임을 그대로 원가계산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노임단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

물품의 제조·공사 및 용역중 대부분은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의하고 있으나, 측량노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국립지리원장)이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표하고 있다.

5.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앞에서 기술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순으로 단위당 가격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